

# 유튜버(YouTuber)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

이승희\*\* · 박성욱\*\*\* · 나형중\*\*\*\*

목 차	
I. 서 론 .....	7
II. 비정형 데이터와 유튜브(YouTube) .....	9
1. 비정형 데이터의 정의	
2. 비정형 데이터의 생산 및 공유 방법	
3.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 유튜브	
4. 시사점	
III. 외국의 현황 .....	13
1. 유튜브 채널 통계	
2. 미국	
3. 인 도	
4. 영 국	
5. 시 사 점	
IV. 유튜버의 소득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8
1. 문 제 점	
2. 개선방안	
V. 결 론 .....	30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본 학위 논문의 심사위원님들과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 주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세무관리 전공), 변호사

\*\*\*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 공동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

\*\*\*\*\* 투고일 : 2020. 3. 10. 1차수정일 : 2020. 4. 22. 게재확정일 : 2020. 5. 12.

### < 국문초록 >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발생 형태가 새롭기 때문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소득이 다국적기업과 관련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소득의 존재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우선 비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살펴본 후, 이렇게 발생한 소득이 과세당국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구글(Google)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과세당국에서 이러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세당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유튜브를 이용하는 창작자들(유튜버, YouTuber)이 과세당국의 관리체계하에 놓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가사경비와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내역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의 전부는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외화소득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첨부서류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영세율의 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추후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 부정행위 관련자들이 환급금 반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국제청장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외화지급 등 거래의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 및 그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있다.

▶ **주제어** : 비정형 데이터, 다국적기업, 유튜브 창작자, 소득세, 혜택과 의무

## I. 서 론

빅 데이터(Big Data)가 화두인 시대이다.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이다.<sup>1)</sup> 그러나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빅 데이터와 관련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이렇게 생성한 문서·사진·동영상을 그 즉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고 공유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즉, 데이터가 새로운 소득의 원천인 것이다.

최근 6세 유튜버(YouTuber,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인 YouTube에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 보람 양의 가족회사인 보람패밀리가 95억 원 상당의 강남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한 것이 화제였다. 보람패밀리는 유튜브(YouTube)에서 채널 2개(보람튜브 브이로그, 보람튜브 토이리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채널의 구독자 수는 수천만 명이고, 이 채널들을 통해 매일 수십억 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sup>2)</sup> 또한 최근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총 약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하여 국세청이 이들에게 총 약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도 있었다.<sup>3)</sup>

- 
- 1) 정영기 외 2인, “빅데이터 도입 효과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1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4, 245~246면.
  - 2) 조선일보, “6살 유튜브 스타의 힘”, 2019. 7. 24.
  - 3) 연합뉴스,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 원 숨겼다 적발…10억 원 추징”, 2019. 10. 10.

위와 같이 동영상이라는 데이터를 인터넷상에 공유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이들 중 일부의 경우 그 소득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와 같은 소득은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며,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역시 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행정이다.

그러나 국가는 수많은 각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국가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국가가 각 국민이 획득한 소득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소득이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세원으로 포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가 공유되는 플랫폼 중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이용하는 플랫폼은 해외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I장에서 비정형 데이터와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대해서 정리하고, III장에서 유튜브 채널의 통계를 바탕으로 미국·인도·영국의 유튜버와 각 나라의 관련 세금에 대해서 정리하며, IV장에서 유튜버의 소득 관련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V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 Ⅱ. 비정형 데이터와 유튜브(YouTube)

### 1. 비정형 데이터의 정의

통상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Data)라고 하며, 최근 기존의 데이터 관리의 한계를 넘어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생성되는 현상을 빅 데이터(Big Data)라고 한다.<sup>4)</sup> 데이터의 종류에는 정형 데이터(Structured Data), 반정형 데이터(Semi-Structured Data),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가 있으며, 이 중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정형 데이터라 함은 규격화된 데이터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미지·동영상·음성 데이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5)</sup>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이유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sup>6)</sup>

4) 정영기 외 2인, 앞의 논문, 242면.

5) 박대현·송동현, “비정형 데이터 활성화의 정치, 경제, 문화적 함의”, 『INTERNET & SECURITY FOCUS』 2014년 2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5면.

6) 박대현·송동현, 위의 논문, 6~7면.

## 2. 비정형 데이터의 생산 및 공유 방법

개인이 자신이 작성한 글, 자신이 찍은 사진 등을 인터넷을 통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1인 미디어’라고 하며,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1인 미디어는 2000년 초 무렵 개인의 미니홈피를 운영했던 싸이월드(Cyworld)라고 할 것이다.<sup>7)</sup>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통해 각 개인은 자신의 사진, 일상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었고 타인은 그 미니홈피에 짧은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장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라 지칭하며, SNS에서 각 개인들에 의하여 생성, 공유되는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 싸이월드 이후의 국내의 대표적인 1인 미디어는 네이버(NAVER)의 블로그(blog), 해외의 대표적인 1인 미디어로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를 들 수 있다. 최근의 1인 미디어의 추세는 글과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공중파 방송사인 MBC에서 방송했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의 컨셉이 인터넷 생방송이라는 점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1인 방송이 최근의 추세라는 점을 알 수 있다.<sup>8)</sup>

1인 미디어의 관련자로는 콘텐츠를 창작하는 자, 창작된 콘텐츠가 중개되는 장소를 제공하는 자, 창작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자가 있다. 콘텐츠를 창작하는 자를 크리에이터(creator), 중개 장소를 제공하는 자를 플랫폼(platform),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자를 멀티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라고 한다.<sup>9)</sup> 유튜브(YouTube)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YouTuber)가 크리

7) 박지혜, “국내 1인 미디어시장 현황 및 발전가능성”, 『KIET 산업경제』 2017년 4월호, 산업연구원, 2017, 45면.

8) 박지혜, 위의 논문, 46면.

9) 박지혜, 위의 논문, 47면.

에이터에 해당하고, 이러한 장을 제공하는 유튜브(YouTube)가 플랫폼에 해당하며, 유튜버의 동영상 제작을 도와주고 저작권을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가 MCN이다. 국내의 MCN 사업은 2013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sup>10)</sup> 대표적인 MCN으로는 CJ E&M이 2015년 5월에 설립한 다이아TV(Digital Influence & Artist TV, DIA TV)가 있다.<sup>11)</sup> 창작자는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플랫폼과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MCN 소속으로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창작자가 플랫폼과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플랫폼은 창작자에게 직접 수익을 지급하고, 창작자가 MCN 소속인 경우 플랫폼은 MCN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MCN이 지급 받은 수익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창작자에게 분배한다.<sup>12)</sup>

### 3.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 유튜브

최근의 1인 미디어의 추세는 개인이 자체 제작하는 영상이나 방송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1인 미디어 플랫폼은 크게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오디오 공유 플랫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이미 제작된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과 실시간 방송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는 유튜브(YouTube), 아프리카TV(afreecaTV), 네이버TV 등이 있고, 오디오 공유 플랫폼으로는 팟캐스트(Podcast), 팟빵(Podbbang) 등이 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의 차이는 유튜브는 실시간 방송보다 이미 제작된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아프리카TV는 실시간 방송으로 창작자와 시청자가 즉석에서 상호 소통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외에 팟캐스트나 팟빵은

10) 이코노미조선, “유튜브가 수익 배분하자…유튜버 키우는 MCN 사업 급성장”, 2018. 5. 9.

11) 최형우, “국내외 MCN산업 동향 및 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전파진흥협회, 2016, 55면.

12) 최형우, 위의 논문, 15~16면.

창작자가 녹음한 오디오를 공유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청취할 수 있다. 이들 플랫폼들은 유튜브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플랫폼과 아프리카TV나 네이버TV와 같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국내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창작자가 각 플랫폼으로부터 획득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WISEAPP)이 2019년 8월 한 달 동안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40,000명을 대상으로 ‘오래 사용하는 앱(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설문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는 유튜브(YouTube)였다. 2위는 카카오톡, 3위는 네이버, 4위는 페이스북의 순서였다. 이는 1년 전인 2018년 8월에 했던 동일한 주제의 설문조사의 순위와 동일하고, 조사대상자들이 각 앱을 사용하는 총 시간은 모든 앱에서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sup>13)</sup>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saramin)이 2019년 성인남녀 3,543명을 대상으로 ‘유튜버에 도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63%에 해당하는 2,233명이 유튜버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이 기대하는 유튜버의 수입은 월 평균 396만 원이었으며,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 분야로는 일상을 공유하고 싶다는 대답이 31.1%로 1위였다. 또한 현재의 유튜버 호황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는 대답이 54.6%였으며, 전체의 62.9%는 언론을 통해 유튜버의 수입을 듣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sup>14)</sup> 위와 같이 1인 미디어 플랫폼 중 국내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플랫폼은 유튜브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 와이즈앱(WISEAPP), <https://www.wiseapp.co.kr> (검색일 : 2020. 3. 10).

14) 사람인(saramin), <https://www.saramin.co.kr> (검색일 : 2020. 3. 10).

## 4.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1인 미디어는 해외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이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상당한 소득을 획득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TV나 네이버TV와는 세무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튜버들이 유튜브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구조 및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외국의 현황

### 1. 유튜브 채널 통계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의 1인 크리에이터(creator) 관련 데이터 정보 및 트렌드의 통계를 분석하는 사이트로는 노क्स인플루언서(NoxInfluencer)가 있다.<sup>15)</sup> 노क्स인플루언서는 유튜브 순위, 유튜브 채널의 예상 수입 등의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튜브 채널의 분석 및 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sup>16)</sup>

노क्स인플루언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구독자 수 기준으로 유튜브의 상위 10위 내의 채널은 대부분 미국에서 개설된 채널이다.<sup>17)</sup>

15) <https://kr.noxinfluencer.com/> (검색일 : 2020. 3. 10).

16) 디지털타임스, “노스 인플루언서, 유튜브 순위 및 통계서비스 제공”, 2019. 6. 20.

17) <https://kr.noxinfluencer.com/youtube-channel-rank/top-100-all-all-youtuber-sorted-by-sub-weekly> (검색일 : 2020. 3. 10).

구독자 수 1위 채널은 인도의 가장 큰 음반 및 영화 제작회사인 Super Cassettes Industries Private Limited에서 개설한 음악채널 T-Series이다.<sup>18)</sup> 그리고 2016년 2월 10일 기준으로 상위 100위 내의 MCN 채널의 대부분은 미국과 영국이 차지하고 있고,<sup>19)</sup> MCN 시장의 규모는 미국에 이어 일본이 그 규모가 크며, 일본의 유튜버들은 대부분 MCN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sup>20)</sup>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미국·인도·영국·일본 중 MCN 중심인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 유튜버의 납세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MCN 소속의 유튜버는 MCN을 통해서 수익을 분배받기 때문에 소득 파악 및 과세 문제가 명확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 2. 미 국

모든 미국 시민은 연방세를 부담하므로 미국 시민인 유튜버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연방개인소득세(Federal Income Tax)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sup>21)</sup> 주세의 경우는 주(State)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경우 1년에 한 번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인 구글(Google)이 미국 국세청과 유튜버 본인에게 그 유튜버의 소득을 전달한다. 구글은 Form 1099-MISC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구글이 연 600달러 이상을 지급한 유튜버의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한다. 따라서 구글로부터 연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지급받은 유튜버는 다른 소득의 유무와 무관하게 자영업자(Self-employed)로서 연방소득세신고서에 그 소득 및 관련 비용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sup>22)</sup>

---

18) <https://kr.noxinfluencer.com/youtube-channel-rank/top-100-all-all-youtuber-sorted-by-sub-weekly> (검색일 : 2020. 3. 10).

19) 최형우, 앞의 논문, 70면.

20) 이코노미조선, 앞의 기사, 2018. 5. 9.

21)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 편( I )』, 한국조세연구원, 2009, 195면.

22)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am-i-required-to-file-a->

이때 사업 관련 비용은 공제되는데, 만약 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하면 사업용으로 사용된 면적을 비율화하여 집과 관련한 비용(임차료·주택담보대출이자·보험료 등)의 일정부분을 사업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며, 전기세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다.<sup>23)</sup>

### 3. 인 도

인도의 유튜브 음악채널 T-Series는 1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여 구독자 수 기준으로 유튜브 전체 채널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에서 유튜브는 인기이다. 이에 인도의 경제매체인 ‘머니컨트롤(moneycontrol)’에서 유튜버와 관련한 기사를 찾을 수 있다.<sup>24)</sup>

인도의 유튜버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sup>25)</sup> 한 회계연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천만 루피(Rs) 이하인 경우와 천만 루피 초과인 경우에 회계장부와 관련하여 이행해야 하는 의무 및 advance tax 납부의무에 차이가 존재한다. 즉, 총 매출액이 천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더 많은 의무가 부여된다.<sup>26)</sup>

인도 법원에서는 법률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일반적 회계원칙에 따른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sup>27)</sup> 이에 따라 유튜버가 동영상을 촬영

---

form-1099-or-other-information-return (검색일 : 2020. 3. 10).

23)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home-office-deduction> (검색일 : 2020. 3. 10).

24) <https://www.moneycontrol.com/news/business/personal-finance/tax-guide-for-youtube-bloggers-heres-how-to-determine-your-income-tax-liabilities-3481951.html> (검색일 : 2020. 3. 10).

25) 최기호·최보람, 『주요국의 조세제도(인도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87면.

26) <https://www.moneycontrol.com/news/business/personal-finance/tax-guide-for-youtube-bloggers-heres-how-to-determine-your-income-tax-liabilities-3481951.html> (검색일 : 2020. 3. 10).

27) 최기호·최보람, 위의 책, 90면.

하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공유하는 데 사용하는 카메라, 컴퓨터, 인터넷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비용은 일반적인 비용으로 전액 공제되고, 카메라나 컴퓨터를 구입하여 소유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은 전액 공제되지는 않고 감가상각이 적용된다.<sup>28)</sup>

## 4. 영 국

MCN 소속이 아니면서 영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유튜버는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MRC)에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등록하고 자진해서 개인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Self-Assessment, 자발적 신고).<sup>29)</sup> 영국은 구분과세제도로 소득을 Schedule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체계이며,<sup>30)</sup> 유튜버의 경우에는 이 중 사업소득(Schedule D)에 속한다.

사업 관련 비용의 공제와 관련하여, 만약 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용된 면적과 그 면적을 사용한 시간을 비율화하여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소요된 전기세, 인터넷 사용료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sup>31)</sup>

28) 최기호·최보람, 앞의 책, 93면.

29) <https://www.gov.uk/self-assessment-tax-returns/who-must-send-a-tax-return> (검색일 : 2020. 3. 10)

30)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 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41면.

31) <https://www.gov.uk/expenses-if-youre-self-employed> (검색일 : 2020. 3. 10).

## 5. 시사점

미국의 경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로부터 직접 유튜버의 소득자료를 제출받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유튜버의 소득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이외의 나라는 구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구글이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글의 자료제공 없이도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구글과 같은 디지털 다국적기업의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sup>32)</sup> 이러한 논의는 현재의 국제조세 체계하에서는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매출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는 현실 때문에 시작되었다.<sup>33)</sup> 우리나라 역시 일명 ‘구글세(Google Tax)’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sup>34)</sup>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라는 기업에 대한 과세를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구글을 활용하는 자에 대한 과세 역시 이루어져야 데이터(Data)를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각자의 소

32) Wouter Lips, The EU Commission’s digital tax proposals and its cross-platform impact in the EU and the OECD,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2019, pp.7~11.

33)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2015, p.25.;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a Fair and Efficient Tax System in the EU for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8, p.2.

34) 유현영·홍민옥, “디지털경제 체제하의 소득세 과세 이슈와 시사점 : 최근 OECD와 EU의 논의를 중심으로”, 『조세재정 BRIEF』 통권 제69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1~12면.

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유튜버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미국과 영국은 모두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생활비 중 사업에 사용되는 비율을 계산하여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는 집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 유튜버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지출에 대한 경비 인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V. 유튜버의 소득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문 제 점

#### 가. 유튜브의 수익 지급 방법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에 가입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협찬을 얻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 기업으로부터 협찬금을 지급받고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기업이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므로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지급받는 정확한 광고수익이 파악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광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자신의 고유한 채널을 개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채널에 올리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 싶다면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만들어 이를 유튜브 채널과 연결하여야 한다.

구글 애드센스<sup>35)</sup>에서는 광고 게재에 동의한 유튜브의 채널이 일정한 수 이상의 구독자가 있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동영상 재생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채널에 광고 영상을 삽입한다. 그리고 이 광고로 인한 수익이 미화 100달러 이상 발생하는 경우 채널 소유주(유튜버)에게 광고수익의 일부를 지급한다. 통상 광고수익을 유튜브와 유튜버가 45 대 55의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6)</sup>

## 나. 수익 지급 방법과 관련한 문제점

우리나라 유튜버의 경우 구글 애드센스와 관련하여 상대방인 계약법인이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Google Asia Pacific Pte. Ltd.(구글아시아태평양 유한회사)이다.<sup>37)</sup> 따라서 이 법인이 구글 애드센스 가입시 유튜버가 기재한 은행계좌로 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광고수익을 지급하고 있다.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에서 국내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수익에는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sup>38)</sup> 따라서 국내 유튜버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유튜버의 의지에 달려있다.

유튜버가 MCN을 통해서 구글로부터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MCN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 후 나머지를 유튜버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유튜버의 소득이 과세당국에 파악되지만, 유튜버가 직접 구글로부터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유튜버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과 달리 구글이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구글은 보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유튜버가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성실하게 밝히지 않는 한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자료가

35) 구글 애드센스, <https://www.google.co.kr/adsense/start> (검색일 : 2020. 3. 10).

36) 이코노미조선, 앞의 기사, 2018. 5. 9.

37) 구글 애드센스,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3025029?hl=ko&ref\\_topic=1727182](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3025029?hl=ko&ref_topic=1727182) (검색일 : 2020. 3. 10).

38) 구글 애드센스,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3025029?hl=ko&ref\\_topic=1727182](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3025029?hl=ko&ref_topic=1727182) (검색일 : 2020. 3. 10).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MCN 소속 유튜버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 개인 유튜버는 스스로, 사실대로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자 사이의 과세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한다.<sup>39)</sup>

또한 현행 외국환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간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로부터 연간 미화 1만 불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을 지급받는 유튜버의 경우에는 그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한 명의 유튜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여 소득을 분산시켜 지급받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sup>40)</sup> 이는 새로운 탈세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 다. 유튜버 소득 파악을 위한 개선방안 필요성

유튜브와 유사한 국내 플랫폼으로 아프리카TV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BJ(Broadcasting Jockey)라고 부르며, 아프리카TV는 이들 BJ가 시청자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시청자가 BJ에게 보낸 별풍선을 돈으로 환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나머지를 BJ에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BJ의 소득을 과세당국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BJ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현재 유튜버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39) 최진웅, “1인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NARS 현안분석』 제7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7면.

40) 서울경제, “유튜버 ‘채널 쪼개기’로 명의 분산…수십억 벌어도 ‘세금 0원’”, 2019. 9. 8.

로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르면 구글 애드센스에 계정을 개설한 유튜버는 사업자이고 구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유튜버의 경우 과세당국에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 때문에 구태여 유튜버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다.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유튜버와 국내 플랫폼 이용자 간의 과세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 때문에 유튜버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유튜버의 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탈세 목적으로 국내 플랫폼이 아닌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며, 거시적·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공정한 과세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개선방안

### 가. 사업자등록시 세액공제 혜택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8 신설)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자료를 구글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글의 거래상대방인 유튜버로부터 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의 전제로 먼저 유튜버를 국가의 과세행정체계 내에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유튜버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과세당국에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유튜버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세금과 관련하여 유리한 상황에 놓이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튜버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미등록가산세이다. 그러나 가산세는 적극적·경제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유튜버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종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장 제1절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당국에서 포착

하기 어려운 유튜버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과세표준 양성화의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중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가 규정된 제6장 제1절에 제126조의8 규정을 신설하여 과세당국이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스스로 과세당국의 관리체계하에 편입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제126조의8로 “해외 플랫폼 이용자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제목으로 법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한다. 신설하는 규정의 본문은 “해외 플랫폼 이용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하되, 공제할 일정한 금액은 경제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면 될 것이다.

이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인지 여부는 유사한 취지의 다른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세액 공제제도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신고세액공제 규정도 최초 도입시 세원 포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현재는 과세당국의 전산망이 정교해지면서 그 필요성이 감소하여 공제 혜택의 비율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하게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되, 과세당국에 세원 포착을 위한 상당한 자료가 축적된 이후에는 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의 적극적 인정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개정)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 및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버의 경우 창작하는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가사관련비용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비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을 만드는 유튜버는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하여 다량의 음식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화장법과 관련한 뷰티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는 각종 화장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옷 잘 입는 법과 관련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는 수많은 옷·구두·가방 등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 경비는 의식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사관련비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상당수의 유튜버는 별도의 공간을 임차하지 않고 집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이를 유튜브에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을 경비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의식주의 성격과 중복되는 비용 지출을 어느 정도 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업무용과 가사용이 혼용된다는 측면에서 업무용 승용차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법인세법 제27조의2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처럼 유튜버가 특정 콘텐츠의 창작과 관련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이를 콘텐츠 창작에 사용한 날짜,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유한 날짜 등을 기록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서식(일명 사용일지)을 마련하는 것이 유튜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단서를 추가하는 형태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즉, 제5호의 단서로 “단, 사용일지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 유튜버와 같이 가사경비와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 어떠한 조건하에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요건이 명확해진다고 할 것이다.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관련하여서는 2016. 1. 1. 첫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와 관련된 비판이 있다.<sup>41)</sup> 그

41) 박승식·최현섭,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 개선방안”, 『회계와 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8, 257면.

러나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가 업무용으로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용으로 혼용할 여지가 있는 승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경비의 인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의 의미를 가진 제도인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튜버의 사용일지는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의 근본적인 방향은 다르다고 할 것이며, 적극적인 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운행기록부와 같은 형태의 사용일지를 작성하는 형식은 차용할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유튜버가 사용일지에 기재하는 경비에 대해서 전액 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상한액의 제한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집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도 있다. 현재도 집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등의 경우 일정 비율의 경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경비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유튜버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만든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임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일정 비율의 경비로 인정하되,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용일지에 어느 면적의 공간을 몇 시간 사용하였는지 기재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위의 제안이 유튜버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유튜버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유튜버가 과세당국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명서류 제출의무 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 개정)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유튜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의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유튜버는 매입내역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행령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행 법규정상으로는 유튜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만 첨부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내역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화입금증명서뿐만 아니라 외화를 지급받은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면 과세당국에서 국내 유튜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특정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유효적절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직권등록 규정에 따라 향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관련 자료로도 사용 가능할 것이다.

유튜버가 외화를 지급받은 근거 자료로는 유튜브에 개설한 채널이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과 관련한 자료(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를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과 국세청 고시(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로 가목 및 나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유튜버의 경우 가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에 다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둔 디지털 다국적기업에 제공한 용역의 근거자료(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 유튜버로부터 채널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관련서식을 마련하면 과세당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더욱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환급금 반환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국세기본법 제25조 개정)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유튜버가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수익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는데 구글 애드센스는 채널을 개설한 영문 이름과 은행 계좌의 명의인이 일치하면 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에 유튜버는 그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여러 개의 채널을 타인 명의로 운영할 수 있다.<sup>42)</sup>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라면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업자등록까지도 타인 명의로 한 유튜버라면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유튜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의 적용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명의대여자가 부정행위로 환급금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명의대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차용자가 실제 운영자로 밝혀지면 세금 납부와 관련

42) 서울경제, 앞의 기사, 2019. 9. 8.

하여 명의대여자는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또한 명의차용자를 기준으로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미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이 있다면 이는 반환되어야 한다. 이때 형식상 명의대여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불분명하므로 환급금 반환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환급금 반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환급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동조 제9항에 규정한 것이 전부이다. 이에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환급금 반환과 관련한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한다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채널을 개설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제5항으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되어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한다.

위의 제안이 유튜버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유튜버가 국가로부터 혜택만 취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외국환거래규정상의 통보기준 삭제(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개정)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간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 따르면 연간 미화 1만 불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는 유튜버는 과세당국에서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화 1만 불이라는 기준을 하향 조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동시에 금액의 한도를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외국환은행의 업무 부담이나 한도 조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43)</sup>

위에서 이제까지 살펴본 4가지 방안들은 유튜버의 자발적인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유튜버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비자발적·강제적 세원 포착 방법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환거래규정상의 미화 1만 불이라는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세원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법 개정이 아닌 기획재정부고시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그 기준을 낮춤으로써 외국환은행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동 규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이미 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우에 최소 통보금액 기준의 제한 없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즉, 외국환은행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기준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추가적인 업무의 부담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기준 자체를 관세청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최소 통보금액 기준을 삭제하면 될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제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제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등의 경우”로 개정하면 동 규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관세청장과 동일한 내용이 될 것이고, 국세청장은 유튜버의 모든 외국환

43) 최진웅, 앞의 논문, 11면.

거래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 V. 결 론

국세청은 최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다.<sup>44)</sup> 이는 현재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소득이 제대로 과세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따른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설된 업종코드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특히 해외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공유하고 동영상의 구독자 수 또는 조회 수가 많아짐에 따라 유튜브로부터 광고를 제공받고 외화(미화)로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유튜버를 중심으로, 과세당국이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방안은 크게 유튜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비자발적 포착을 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는 과세행정의 관리하에 놓이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응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벌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첫째, 유튜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현실하에서 이들이 과세당국의 관리체계하에 편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등록신청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4) DailyNTN, “국세청, 유튜브·SNS마켓·숙박공유 등 업종코드 신설”, 2019. 9. 6.

둘째,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물품이 일정 부분 기사경비와 중복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사업경비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유튜버들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강화하여 유튜버가 외화를 지급받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과세관청은 유튜버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적절한 과세행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튜버가 소득을 분산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경우 이 환급금의 반환과 관련한 책임이 모호해져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환급금 반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국세청장이 통보받는 금액 기준을 삭제하여 관세청장이 통보받는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외국환은행의 장의 업무를 과중시키지 않으면서 국세청장이 모든 유튜버의 외화지급 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공헌점은 향후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이를 세원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국내 문헌

- 박대현·송동현, “비정형 데이터 활성화의 정치, 경제, 문화적 함의”, 『INTERNET & SECURITY FOCUS』 2014년 2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 박승식·최현섭,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 개선방안”, 『회계와 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8.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 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박지혜, “국내 1인 미디어시장 현황 및 발전가능성”, 『KIET 산업경제』 2017년 4월호, 산업연구원, 2017.
- 유현영·홍민옥, “디지털경제 체제하의 소득세 과세 이슈와 시사점 : 최근 OECD와 EU의 논의를 중심으로”, 『조세재정 BRIEF』 통권 제69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 편(I)]』,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정영기·석명건·김창재, “빅데이터 도입 효과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1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4.
- 최기호·최보람, 『주요국의 조세제도(인도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최진웅, “1인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NARS 현안분석』 제7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 최형우, “국내외 MCN산업 동향 및 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전파진흥협회, 2016.

### 2. 국내 기사

- 디지털타임스, “녹스 인플루언서, 유튜브 순위 및 통계서비스 제공”, 2019. 6. 20.
- 서울경제, “유튜버 ‘채널 쫓개기’로 명의 분산…수십억 벌어도 ‘세금 0원’”, 2019. 9. 8.
- 연합뉴스,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 원 숨겼다 적발…10억 원 추징”, 2019. 10. 10.
- 이코노미조선, “유튜버가 수익 배분하자…유튜버 키우는 MCN 사업 급성장”,

2018. 5. 9.

조선일보, “6살 유튜브 스타의 힘”, 2019. 7. 24.

DailyNTN, “국세청, 유튜버·SNS마켓·숙박공유 등 업종코드 신설”, 2019. 9. 6.

### 3. 국외 문헌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a Fair and Efficient Tax System in the EU for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8.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2015.

Wouter Lips, The EU Commission’s digital tax proposals and its cross-platform impact in the EU and the OECD,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2019.

### 4. 인터넷 자료

구글 애드센스, <https://www.google.co.kr/adsense/start> (검색일 : 2020.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0. 3. 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검색일 : 2020. 3. 10).

녹스인플루언서, <https://kr.noxinfluencer.com/> (검색일 : 2020. 3. 10).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검색일 : 2020. 3. 10).

사람인, <https://www.saramin.co.kr> (검색일 : 2020. 3. 10).

와이즈앱, <https://www.wiseapp.co.kr> (검색일 : 2020. 3. 10).

영국 정부, <https://www.gov.uk> (검색일 : 2020. 3. 10).

인도 경제매체, <https://www.moneycontrol.com> (검색일 : 2020. 3. 10).

<Abstract>

## The Study for Taxing Individual Income Tax on YouTube Creators

Lee, Seung Hee\* & Park, Sung Ook\*\* & Na, Hyung J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entire world has been united through a single source of network and with the evolution of smartphones, anyone can film a video anywhere and share it around the globe. Being accompanied by this situation is a brand new type of income. However, though the income made, the newborn type of income is not yet being taxed. When this income is especially related to a multinational corporation, it is difficult for the National Tax Service(NTS) to determine the existence and proper size of income earned by workers in this field.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create new policies for those who work in this field and properly tax them.

This study will examine the unstructured data in this field and process the formations of new income to suggest new polici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NTS to consider. Although frequent situations have been uncovered of workers making income through the unstructured data, this study focuses on the income made from YouTube, a video sharing platform managed by Google.

In order for the NTS to thoroughly examine this new type of income, we need to draw YouTubers willing to participate in NTS system. Offering benefits to these YouTubers while calculating each YouTuber's income tax would provide help to achieve the goal. Nevertheless, YouTubers should be strongly taxed by directing the YouTubers to submit a written document of their tax data. And the YouTubers should take full responsibility when they have taken a tax refund by evading the regulations. Lastly, this study makes a suggestion on changing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This study guides an investigation of new policies for those who make profits

---

\* Primary Author : Lawyer, Maste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Kyung Hee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 Co-author : Research Professor, SKK Business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through unfamiliar methods.

- ▶ **Key Words** : unstructured data, multinational corporation, YouTube creator, individual income tax, benefit and responsibility

